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5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어기구·박희승·이개호

박홍배 • 박수현 • 조인철

소병훈 • 안호영 • 주철현

이연희 · 이정문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식량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.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.8%(2020년 기준)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고,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구조임.

상황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농가소득(2022년)은 평균 4,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.4% 감소하였고,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(2022년)은 949만원 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.8%나 감소하였음.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득 감소 외에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우리 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

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 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농업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관련 정책 수립·시행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농업인의 권리를 규정함 (안 제6조).
- 라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마. 농업인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- 바.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, 농업인기초연금,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(안 제10조, 제13조, 제15조).
- 사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, 영농형태양광 지원, 농업인 고용 지원,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

행하도록 함(안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).

아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, 농업기계 자금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
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자재 지원 등 농업 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농업인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다른 산업종사자와 동등한 소득을 실현 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 - 2. "농업인 소득보장"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이 농촌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5조(농업인의 책무)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

속가능한 농업 ·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6조(농업인의 권리) 농업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관련 정책 수립·시행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.
- 제7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농업인 소득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8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소득보 장에 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제9조에 따른 농 업인소득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 방향
 - 2. 농업인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
 - 3.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(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) ① 농업인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

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
- 2.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) 국가는 농업·농촌 및 임업·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필수농자재 지원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약, 비료, 사료 등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농업기계 자금지원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농업인기초연금 지급) 국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농외소득 활동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농외소 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

야 한다.

- 제15조(농업인안전보험 지원) 국가는 농업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 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영농형태양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의 확보 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영농활동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농업인 고용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「민법」상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상 회사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농촌융복합산업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